의안 번호	52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2. 11. 22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52호

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4.

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7.

2. 제안이유

○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른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명칭 추가 및 정비 (별표1 개정)

나. 사용신청 주민 우선 조항 추가 : (제3조 4항)

다. 명칭 변경 : 제10조(사용료의 감면 등) 내용개정

- “성북구 생활체육회” ⇒ “성북구체육회” (2021.6.2.법인설립등기)

라. 국가유공자 감면 조항 추가 : 제10조(사용료의 감면 등) 1항 5호 개정

- “국가유공자(배우자포함)” ⇒ “별표3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”으로 개정
- 별표3을 추가 (별표3 제정)

마.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을 정비

바. 기한지난 조항 삭제 : 제10조(사용료의 감면 등) ③항 폐지

- 2019년 12월 31일까지 10% 감면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재시스템

사. 이용료 반환규정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맞도록 개정 : 제10조, 11조

아. 사용제한 사유 발생 시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공개하는 조항 추가 : 제13조 3항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제3항, 제4항 및 제6항, 시행령 부칙제2조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등 8개 관계법령

나. 예산 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2. 10. 06. ~ 2022. 10. 26.

○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○ **본 개정안은**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신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시설을 조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**안 제3조제5항 및 제13조제3항은**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」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 사용신청 시 주민 우선 조항과 공공질서 위반 등의 행위로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 30일간 사용 허가를 금지하는 것을 추가한 것임.

○ **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와 제10조제2항제1호는**「국민체육진흥법」개정으로 지방체육회가 법인화되어 (2021. 6. 2. 법인설립 등기) 그 명칭이 “성북구 생활체육회”에서 “성북구 체육회”로 변경된 사항과「장애인복지법」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“3급이상 장애인”을 “장애인”으로 변경한 것이며,

○ **안 별표 3은** 국가유공자 등 현행 조례에 누락되어 있는 감면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, 국가를 위해 희생,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보상과 예우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에 적법 타당함.

○ **안 제10조3항은**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의 사용확산을 위한 감면 규정의 기한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한 사항이며,

○ **안 제11조제1호는**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취소시기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%의 위약금을 부과하던 현행 기준을 취소 시기별로 위약금을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한 것으로, 이는 소비자피해방지와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맞도록 정비한 것이고,

○ **안 별표1 개정은** 정릉족구장, 물빛수영장, 종암박스파크 등 체육시설 5개소가 신규 조성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임.

□ 종합의견

○ **본 개정안은** 국민권익위원회의 '국민생활 속 반칙·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' 권고안에 따라 정비하고, 보훈대상자 중 기존에 명시하지 않은 8개 보훈 관련 법령 대상자를 감면 규정에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